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2.9.11 (화) 10:0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전문위원 송장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유완백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2년 8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3. 제안 이유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내 공공기관에 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여성기업 지원 제한 조문 명확화(안 제4조)

다. 5년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문 신설(안 제5조의1)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